#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56

발의연월일: 2021. 1. 21.

발 의 자:윤재옥·안병길·김희곤

정희용 · 김용판 · 김승수

류성걸 · 김예지 · 홍석준

양금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, 의료지원, 요양지원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,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음.

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문제 치유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4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4(심리적 재활 등)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 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,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<신 설> | 제19조의4(심리적 재활 등) ① 국 |
|       | 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와 그      |
|       |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     |
|       | 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     |
|       | 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     |
|       | 시책을 마련하고, 그 사업을 수    |
|       | 행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|
|       |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    |
|       | •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   |
|       |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     |